

의안번호	제320호
의결연월일	2021. 3. 17.

-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3. 9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재무과장 : 복 준 수)

가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『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』을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분	당초 계획(A)			금회 변경 계획						합계(A+B-C)		
	건수	면적	금액	증가(B)			감소(C)			건수	면적	금액
		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		
총계	171	118,740.32	60,350,856	10	5,145	6,209,837				181	123,885.32	66,560,693
취득	소계	171	118,740.32	60,350,856	10	5,145	6,209,837			181	123,885.32	66,560,693
	토지	134	99,200	9,029,856	9	2,645	129,837			143	101,845	9,159,693
	건물	33	16,170.32	41,811,000	1	2,500	6,080,000			34	18,670.32	47,891,000
	기타	4	3,370	9,510,000						4	3,370	9,510,000
처분	소계											
	토지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

관리계획 내역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재산현황				필지 (수량)	면적	금액	
구분	사업명						
취득	합계		3건	12	6,599.8	7,609,837	
	매입	신축 건물	청년 문화·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	1	2,500	6,080,000	
		토지	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		1	850	1,100,000
				건물		1	604.8
토지	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	9	2,645	129,837			
처분	합계		건				
	매각	토지					
		건물					
	기타						

※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은 재산 변경은 없음(사업내용 변경)

□ 사업별 관리계획 내역

① 청년문화·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

재산표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득 (처분) 시기	취득(처분)사유	추진 부서	비고
구분	소재지	면적 (수량)					
건물	예산읍 주교리 258-2 번지 일원	2,500m ² (1동)	6,080,000	2023년 12월	-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(국가균형발전위원회) -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청년문화·복지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활력회복의 전환점 마련	기 획 담당관	

②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

재산표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득 (처분) 시기	취득(처분)사유	추진 부서	비고
구분	소재지	면적 (수량)					
토지	예산읍 예산리 형제고개 로 967	850m ² (1필지)	1,100,000	2021년 9월	- 예산상설시장 내 노후된 장옥(건물,토지)을 취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	경제과	
건물		604.8m ² (1동)	300,000				

※ 2020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, 장옥(건물, 토지) 매입 후 주차장 조성 및 5일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, **쾌적한 공간으로 정비(리모델링)** 하는 것으로 **사업계획을 변경**하여 추진하고자 함.

③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

재산표시			추정가액 (천원)	취득 (처분) 시기	취득(처분)사유	추진 부서	비고
구분	소재지	면적 (수량)					
토지	예산읍 관작리 38-1, 37-6, 37-7, 37-5, 36-5, 36-4, 58-3, 28, 28-2 번지	2,645m ² (9필지)	129,837	2021년 1월	- 관작리 야적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야적장 진입도로 개설 후 예산군에 기부채납	건설 교통과	

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- 본 『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』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1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청년 문화·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과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에 따라 건물 1동 2,500m² 60억 8,000만원, 토지 9필지 2,645m² 1억 2,983만원 등 총 10건에 5,145m² 62억 983만원이 증가되고,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
○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

- ① 청년 문화·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은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활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총 60억 8,0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타운 1,200㎡, 생활문화센터 700㎡, 주거지 주차장 600㎡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지면적 1,996㎡에 연면적 2,500㎡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,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,
- ②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은 총 21억원의 사업비로 예산상설시장 내 노후된 장옥 건물 1동 604.8㎡와 장옥 부지 1필지 850㎡를 매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, 제26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장옥 철거 후 주차장 및 5일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을, 장옥을 리모델링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산의 변동은 없으며,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
- ③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 건은 당초 야적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한 진입로 개설 허가에 붙인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으로서,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○ 이상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 및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 및 제7조, 「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